

# 국가 지역인재 수습 직원 추천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 2017. 01. 11

개정 : 2024. 1. 11

제 1조(목적) 본 국가 지역인재 수습직원 추천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국가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와 관련하여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생취업지원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등 총5명 이내로 구성한다. (2017. 11. 1., 2019. 4. 1., 2021. 12. 13., 2022. 12. 26. 개정)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취업지원처장으로 한다. (2017. 11. 1., 2019. 4. 1., 2021. 12. 13., 2022. 12. 26. 개정)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은 취업진로지원팀에서 담당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취업진로지원팀장으로 한다. (2017. 11. 1., 2019. 4. 1. 개정)

제 4조(추천심사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가 지역인재 수습직원 교내 추천기준에 대한 심의
2. 적임자 선발을 위한 각종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국가 지역인재 수습직원 교내 추천에 관하여 부수되는 사항

제 5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조(추천대상자 선정절차) 국가 지역인재 수습직원 추천을 위한 선정절차는 교내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원자를 모집한 후 별도의 선정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제 7조(추천대상자 선정기준) ① 국가 지역인재 수습직원 추천대상자는 우리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로 한다.

② 위 1항의 대상자 중 정부 공고에 따른 추천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 가운데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과 비율에 의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취득학점 총평점평균 : 20% (2017. 11. 1. 개정)
2.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 : 10%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점수 : 10%
4. 지역사회 봉사활동 경력 : 20%
5. 위원회 면접 점수 : 40%
6. 직렬(직류) 관련 가산점 : 인사혁신처 가산점 부여 인정 자격증(공무원 임용시행령 별표12)을 취득한 자는 자격증별 5점(최대 2개까지 인정) 다만, 자격 종목이 동일한 경우 상위 자격 등급만 인정하고, 자격종목이 다른 경우 자격 등급이 동일하더라도 별도 자격증으로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 한다. (2021. 12. 13. 신설) (2024. 1. 11. 개정)

예) (일반기계 직류의 경우) 자격종목이 다른 경우에만 2개까지 인정

① 기계설계기사와 기계설계산업기사 취득 : 1개 인정

② 기계설계산업기사와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취득 : 2개 인정

③ 평가비율의 60%이상인 지원자에 대하여 적격으로 처리한다. (2024. 1. 11. 신설)

④ 각 평가기준의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8조(지침의 개폐) 이 지침의 개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에 의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지침은 2017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지침은 2019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지침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지침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지침은 2024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인사혁신처 기술직군 자격증 요건

〈 자격증 요건 요약 〉

**기술직군의 경우, 아래 자격증 취득자는 자격증 해당 직렬(직류)로 추천 가능**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학과 전공자는 해당 없음)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6·7급)의 필수 자격증 취득자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의 자격증 취득자	
	기능사	산업기사 이상
학과 전공 계열(공학·자연·의약)에 관계없이 취득 자격증 해당 직렬(직류)로 추천 가능		
가점 미부여	가점 미부여	가점 부여

※ 자격증 취득은 인터넷 응시원서 제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6·7급)> 예시 전산직렬(전산개발)의 경우

- 공학, 자연, 의약계열 학과 전공자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추천 가능. 가산점은 미부여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 예시 공업(일반기계)의 경우

- 공학계열 학과 전공자는 자격증이 없어도 추천 가능. 컴퓨터응용선반 기능사 자격증은 취득해도 가산점 미부여. 컴퓨터응용가공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가산점 부여
- 자연, 의약계열 학과 전공자는
  - 컴퓨터응용선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추천 가능. 가산점 미부여
  - 컴퓨터응용가공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추천 가능. 가산점 부여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

**채용시험·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

직 렬	직 류	6·7급
전산	전산개발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데이터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비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	일반 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직렬	직류	「국가기술평가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화공	기술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위험물, 가스		
		기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시설	일반 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방재 안전	방재 안전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 통신	전송 기술	기술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 이전 취득)	
농업	일반 농업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직렬	직류	「국가기술훈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환경	일반 환경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보건	보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 2급
		기능사: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 3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은 가산자격증으로 인정됨	